

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15. 2. 2 규칙 제777호
일부개정 2015. 7. 28 규칙 제798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20. 4. 1 규칙 제999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7. 28>

제2조(기금의 지원대상) 용인시 양성평등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지원대상은 「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13조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. <개정 2015. 7. 28, 2020. 4. 1>

1. 용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 비영리법인·단체
2.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·연구소
3. 그 밖에 여성발전 또는 양성평등 촉진과 관련하여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

제3조(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)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서 및 수입·지출예산서
2. 법인·단체의 현황 및 정관 등
3. 신청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(제2조제2호의 경우에는 제외)
4.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증명서류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17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. <개정 2015.

7. 28, 2020. 4. 1>

1. 사업목적의 적정성
2.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성
3.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
4. 사업비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
5. 최근 1년간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 사업추진 실적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금의 신청 및 교부) 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8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결정된 지원 사업내용과 비교 검토한 후 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8>

제5조(사업계획의 변경)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사업내용 중 가벼운 사항의 변경이나 지원대상 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8>

제6조(기금의 정산 및 반납)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, 지원 받은 기금 중 집행잔액은 기금 정산서류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8조(기록의 관리·보존)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,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·보존한다. 다만, 전산으로

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,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4. 1>

1. 기금관리대장(별지 제4호서식)
2. 기금교부대장(별지 제5호서식)
3. 현금출납부(별지 제6호서식)

제9조(양성평등상 선발기준) 조례 제10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상(이하 “양성평등상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단체, 기관을 선발한다. <개정 2015. 7. 28, 2020. 4. 1>

1. 사회 각 분야에서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한 자
2.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, 가족친화경영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자
3. 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, 취약계층 여성 지원 등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
4. 그 밖에 양성평등 사회실현과 여성 권익증진 등에 기여한 자

[제목개정 2015. 7. 28]

제10조(수상후보자 추천)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4. 1>

1. 추천서 1부(별지 제7호서식)
2. 공적조서 1부(별지 제8호서식)
3. 현지조사확인서 1부(별지 제9호서식)
4.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

제11조(서류의 보완 및 반환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

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폐지) 「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시행규칙」은 폐지한다.

부칙 <2015. 7. 28 규칙 제798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4. 1 규칙 제999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(2)] <개정 2015. 7. 28>

1. 사업계획

가. 사업명

나. 목적

다. 내용

라. 소요예산 및 지원 신청액

(단위 : 원)

내역	소요 금액	산출 근거	지원 신청액

마. 소요예산 조달방법

(단위 : 원)

구분	금액	비고
계		
양성평등기금		
자체운용자금		
회원 모금		
복지가후원금		
그 밖의 자원		

바. 정부보조금(국비·도비 양성평등기금) 지원내역

(단위 : 원)

사업명	사업 기간	지원 금액	보조금 구분	비고

2.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

가. 단체의 구성현황

임원수					회원(단원)수		
회장	부회장	이사	기타	계	정회원	준회원	기타

나. 활동실적

활동 내용	그 밖의 내용	비고

다.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

등록(허가, 신고) 번호	등록(허가, 신고) 일자	등록(허가, 신고) 내용	등록기관명

[별지 제3호서식(2)] <개정 2015. 7. 28>

1. 지원사업 추진실적

(단위 : 원)

사 업 개 요	
추진 실적	
효 과	
문제점 및 건의	

2. 지원금 집행내용

(단위 : 원)

집행 내용	집행액	비고
계		

※ 비고: 집행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한다.

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5. 7. 28>

기금관리대장

(단위 : 원)

연월일	적 요					수입	지출	잔액	비고
	예금종류	은행명	통장번호	이율	기간				

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15. 7. 28>

기금교부대장

(단위 : 원)

연월일	적요	채권자	수입	지출	잔액	비고

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15. 7. 28>

현금출납부

(단위 : 원)

연월일	적요	수입	지출	잔액	결재		
					실무관	팀장	과장

[별지 제9호서식]

현 지 조 사 확 인 서

1. 인적사항

주소 또는 소속	
직업 (직위)	
성 명	
생 년 월 일	

2. 현지조사 확인내용

- 품 성
- 지역여론 (공사생활 등)
- 공적사항 (공적내용과 일치여부)

[비고] 개조식으로 작성한다.

년 월 일

[현지 확인자]

인

용인시장 귀하